

이사회규정

제 정 1989.04.01.
개 정 1990.12.12.
개 정 1991.11.22.
개 정 1993.05.26.
1994. 8.10.(301부칙)
개 정 1998.02.17.
개 정 2001.05.04.
개 정 2001.12.27.
개 정 2003.01.09.
개 정 2003.06.25.
개 정 2004.03.26.
개 정 2005.03.16.
개 정 2006.04.19.
개 정 2009.02.11.
개 정 2010.03.31.
개 정 2012.07.18.
개 정 2013.03.13.
개 정 2014.03.20.
개 정 2015.03.19.
개 정 2016.02.18.
개 정 2019.06.13.
개 정 2020.09.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KT&G(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능) 이사회는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매입·양도·처분, 대규모 자금의 차입, 이사의 선임·해임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상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재직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사는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②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사장 또는 사내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 또는 사내이사의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회 경우에는 사장 또는 사내이사를 재적이사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사외이사가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사외이사는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의사정족수를 산정하기 위한 출석이사의 수에는 산입한다.

⑤이사회는 이사회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의장) ①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②삭제

③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지 아니한다.

④이사회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를 조율하며,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본조 제2항 각 호와 제15조 제1항으로 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 내 해당 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5)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사채의 발행에 관한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준비금의 자본전입 승인
- (5)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에 관한 사항
- (6) 자본금 5%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7) 자본금 5%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 (8) 자본금 10%이상의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 (9) 자본금 10%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처분 결정
- (10) 자본금 5%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대여금, 면제
- (11) 자기자본의 25%이상의 차입
- (12)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익활동의 의결

3. 중요 경영에 관한 사항

- (1) 중장기 종합경영계획의 승인
- (2) 기업이념, 비전, 철학 등 기업정체성에 관한 사항
- (3) 중요한 CI 제정 및 변경
- (4) 이사윤리행동 강령 및 기업윤리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 의장의 선임
- (6) 위원회 위원의 선임
- (7) 사외이사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거래 금액 50억원 이상)
- (9) 이사회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11) 준법통제기준 수립·변경 및 준법지원인의 임면
- (12) ESG 전략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사내이사 경업승인

(2) 상법에 규정된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

(3) 상법에 규정된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법령 및 정관상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③사장을 포함한 사내이사가 참여할 수 없는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동의에는 사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1.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2. 사장과 체결한 경영계약 이행여부의 평가와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

3. 사장 또는 사장후보의 사내이사후보 추천과 사장의 사내이사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4.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계 법령·정관 및 사장의 경영계약서 등에서 규정한 사항

④이사회는 제2항 각 호의 의결사항중 이사회 결의로서 정한 범위 내의 사항을 사장에게 위임하여 결정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간결산 결과

2. 위임사항 중 중요 사항

3. 최근 경영상황과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요구한 사항

⑥제2항 각 호의 의결사항 중 예산 승인시에 포함된 사항이나 중장기 경영계획 등에 의해 이사회 결정이 있었던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부의절차) ①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의결사항, 보고사항 및 협의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은 제9조제2항이 규정하는 회의개최일 9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소집절차)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간사는 회의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전자우편 또는 팩스 포함) 또는 구두로 소집내용을 통보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결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사장 및 사내이사의 해임건의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는 사외이사 재적원 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하고,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및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시에는 이사 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당해 안건의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한다.

④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사록) 간사는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그 안건, 경과와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의서 작성·통보) ①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이 결의되었을 경우에는 간사는 결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간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요구권(개정2001.05.04)) ①사외이사는 최적의 의사결정 수행을 위하여 사내이사 및 경영임원의 직무와 관련한 필요자료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사외이사는 사장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조사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 ①사외이사는 각 해당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사외이사가 전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의 배경, 내용,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①정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내에 둘 수 있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배구조위원회(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함)

-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기준과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2) 정관, 이사회규정, 기업지배구조현장 등 지배구조관련 규정 제·개정안 사전심의
- (3) 사장 승계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사장후보 육성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장후보자군 구성
- (6)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장후보 심사대상자 추천
- (7)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한 사장후보 심사기준 제안
- (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후보 심사기준 제안
- (9) 사내이사후보 심사기준 결정 및 자격심사
- (10) 기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평가위원회 (3인 이상의 사외이사)

- (1) 경영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과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 (2)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
- (3) 사장후보와 체결할 경영목표 등에 대한 계약조건 결정
- (4) 사장과 사내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 (5) 사장의 요청에 의한 경영계약서상의 경영평가지표와 가중치의 변경에 대한 의결
- (6) 사장의 경영평가 및 보상에 대한 의결
- (7) 사장의 계량 및 비계량지표 실적의 점검 및 조정

3. 경영위원회(2인 이상의 사내이사)

- (1) 종업원·소비자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
- (2) 법적·제도적 주요 경영리스크 점검 및 대책 수립
- (3) 지점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대한 의결
- (4) 500억원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단, 자본금의 10% 이상은 이사회 의결)
- (5) 50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단, 자본금의 10% 이상은 이사회 의결)
- (6) 2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단, 자본금의 5% 이상은 이사회 의결)
- (7) 200억원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의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단, 자본금의 5% 이상은 이사회 의결)
- (8) 100억원을 초과하는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대여금, 면제(단, 자본금의 5% 이상은 이사회 의결)
- (9) 자기자본의 10% 이상의 차입(단, 자기자본의 25% 이상은 이사회 의결)
- (10) 주식관련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및 주주명부 폐쇄에 관한 사항
- (11) 주요 성장사업의 발굴
- (12)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점검 및 리스크관리
- (13) 사회공헌활동의 발굴 및 예산승인시 포함되지 않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사회공헌활동 의결(단, 10억원을 초과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함)

- (1)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추천
- (2)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인 임시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사전심의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장은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다. 단,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회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제15조에서 정한 이사회 내 해당 위원회는 사내이사 후보 자격 심사기준을 정하여 사장 또는 사장후보가 추천한 사내이사 후보에 대해서만 자격을 심사한 후 사장 또는 사장후보에게 자격적합자만을 통보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의결사항 중 예산 승인시에 포함된 사항이나 중장기 경영계획 등에 의해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신설2001.05.04>) 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호선으로 선임한다.

②정관상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정관상의 위원회”라 한다)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소속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위원회의 사외이사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정관상의 위원회 및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구는 이사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위임받은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의나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심의의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정관상의 위원회 및 위원회의 부의절차와 소집절차, 의사 및 결의와 의사록 작성에 대해서는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

⑦이사회는 경영위원회 보좌기구로서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등) 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사외이사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 ①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견교환 등을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회의를 반기별로 1회씩 개최하며, 긴급히 논의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삭제

③이사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주관하며, 필요시 회사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 지급) ①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과 금액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989.04.01>

이 규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2>

이 규정은 199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1.22>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5.26>

이 규정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2.17>

이 규정은 1998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04>

이 규정은 200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7>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09>

이 규정은 200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25>

이 규정은 200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26>

이 규정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16>

이 규정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세칙의 폐지) 이사회규정시행세칙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2009.02.11>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3.31>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18>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3.13>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3.20>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3.19>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8>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13>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22>

이 규정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차 이 사 회 결 의 서

의 결 자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의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의결일자	20 (: ~ :)			장 소				
작 성 자								
의안번호	제 안 자	제 목					의결결과	
결 의 사 항								

210mm×298mm(인쇄용지 70g/m²)